외국투자에 관한 법규

제1조: 이 법령을 적용하는데 있어 본문에 다르게 명시하지 아니하는 한 각 단어와 표현은 다음의 의미를 갖는다:

(ㄱ)위원회: 최고경제위원회

(ㄴ)운영위원회: 사우디투자청운영위원회

(ㄷ)투자청: 사우디투자청(SAGIA: Saudi Arabian General Investment Authority)

(ㄹ)청장 또는 위원장: 사우디투자청장과 투자청운영위원장

(ㅁ)외국인투자자: 사우디국적을 취득하지 아니한 자연인 또는 모든 사원이 사우디국적을 취득하지 아니한 법인

(ㅂ)외국투자: 이 법규에 따라 허가를 취득한 활동에 외국자본을 투자하는 행위

(ㅅ)외국자본: 이 법규에서 외국자본이란, 외국인투자자가 소유한 재산과 권리로 다음과 같다: (1)현금, 금융어음, 상업어음

(2)자본을 증대하거나 기존의 사업을 확장하거나 새 사업을 설립한 경우 외국투자수익

(3)투자에 관련한 설비, 도구, 장비, 부품, 운송수단, 생산에 필요한 물자

(4)허가, 지적재산권, 기술지식(Idea), 이행능력, 생산방식과 같은 지적 권리

(ㅇ)상품제조업체: 산업제품과 농업제품(식물상품과 동물상품포함)을 생산한 기업체

(ㅈ)서비스제공업체: 서비스를 제공하거나 공사작업을 이행한 기업체

(ㅊ)법규: 외국투자법규

(ㅋ)규정: 외국투자법규에 대한 시행규정

제2조 각 관련법규와 협정에 명시한 바를 준수하여 사우디 내 영구적으로 또는 임시로 투자사업에 외국자본을 투자하는 경우 투자청으로부터 허가를 발급받는다. 투자청은 투자허가신청에 필요한 문서제출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신청에 대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투자청은 허가에 대한 결정 없이 30일이 경과한 경우 투자자가 신청한 허가를 발급해주어야 한다. 투자청이 상기 명시한 기간 이내에 신청을 거부한 경우 거부결정은 그 사유가 있어야 하며, 신청이 거부된 자는 각 법규가 지정한 바에 따라 결정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제3조 최고경제위원회는 외국자본이 투자되는 활동의 종류별 목록을 공표한다.

제4조 제2조에 명시한 바를 준수하여, 외국인투자자는 여러 활동에 대하여 1건 이상의 허가를 취득할 수 있으며 시행규정을 통하여 이에 관한 규칙을 지정한다.

제5조 이 법규에 따라 영업허가를 취득한 외국투자기업은 다음의 두 형태로 구성된다: (1)내국인투자자와 외국인투자자가 소유한 기업

(2)외국인투자자가 전적으로 소유한 기업

투자기업의 법적 형태는 관련법규와 지침을 통하여 지정한다.

제6조 이 법규에 따라 허가를 취득한 사업에 대하여는 국내사업이 각 법규와 지침에 따라 받는 모든 특혜와 보장혜택을 제공한다.

제7조 외국인투자자는 자신의 지분판매 또는 사업청산 또는 기업체가 취득한 수익으로 발생한 금액을 국외로 송금하거나 모든 합법적인 방식을 통하여 처분할 수 있다. 또한 투자사업의 계약비용지급에 필요한 금액을 송금할 수 있다.

제8조 이 법규에 따라 허가를 취득한 외국기업은 「외국인의 부동산소유 및 투자에 관한 법규」의 규정에 따라 허가 받은 활동을 수행하거나 직원전체 또는 일부의 주거를 목적으로 필요한 부동산을 소유할 수 있다.

제9조 외국인투자자와 그의 외국인직원은 투자허가를 취득한 기업에 대한 보증인이 될 수 있다.

제10조 투자청은 투자하고자 하는 자에 대하여 필요한 정보와 통계를 제공한다. 또한 투자에 관한 모든 거래를 활성화하고 성과를 실현할 수 있도록 필요한 지원과 절차를 제공한다.

제11조 법정판결 없이 외국인투자자가 소유한 투자재산의 전체 또는 일부를 몰수할 수 없다. 또한 투자사업에 대한 재산권의 전체 또는 일부에 대하여도 몰수할 수 없다. 다만,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경우에 한하여는 몰수가 가능하나, 이 경우 관련법규와 지침에 따라 정당한 보상이 지급된다.

제12조 (1)투자청은 외국인투자자가 이 법규와 그 시행규정을 위반한 경우 지정기간 동안 투자자에게 위반행위시정을 서면으로 경고한다.
(2)다른 법규에서 명시한 최고 벌칙을 위반하지 아니하는 한도에서 위반행위를 시정하지 아니한 외국인투자자에 대하여는 다음의 벌칙에 처한다: (ㄱ)외국인투자자에게 제공되는 혜택의 전체 또는 일부에 대한 불허
(ㄴ)50만리얄 이하의 벌금부과
(ㄷ)투자허가취소
(3)(2)항에 명시한 벌칙은 운영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집행한다.
(4)벌칙집행결정에 대하여는 관련법규에 따라 민원기관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제13조 사우디아라비아왕국이 가입한 협약을 위반하지 아니하는 한도에서 다음의 각 항을 이행한다: (1)이 법규에 따라 허가를 취득한 투자사업에 관련하여 정부와 외국인투자자 간 발생한 분쟁에 대하여는 상호합의를 통하여 최대한 우호적으로 해결하고, 우호적인 해결이 불가한 경우에는

관련법규에 따라 해결한다.

(2)이 법규에 따라 허가를 취득한 투자사업에 관련하여 외국인투자자와 내국인동업자 간 발생한 분쟁에 대하여는 상호합의를 통하여 최대한 우호적으로 해결하고, 우호적인 해결이 불가한 경우에는 관련법규에 따라 해결한다.

제14조 이 법규에 따라 허가를 취득한 모든 투자사업에 대하여는 사우디아라비아왕국에서 시행 중인 소득규정(개정된 부분 포함)을 적용한다.

제15조 외국인투자자는 사우디아라비아왕국에서 시행 중인 모든 법규, 규정, 지침과 사우디아라비아왕국이 가입한 국제협약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16조 이 법규의 적용 시 기존의 외국투자사업이 법규시행 이전에 합법적으로 취득한 권리를 침해하지 아니한다. 다만, 기존의 투자사업활동이행 또는 사업자본증대 시 이 법규의 규정을 적용한다.

제17조 투자청은 시행규정을 공포하고 관보에 게재한다.

제18조 이 법규는 관보에 게재하고 게재일자로부터 30일 후 시행한다. 「1978년 제4차 외국자본투자법규」와 이 법규에 반하는 모든 규정은 폐지한다.